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해양 분야 특수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7명(경위 7명, 경사 6명, 경장 4명, 7급 9명, 8급 7명, 9급 4명),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1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10명, 경장 12명, 순경 11명, 8급 1명, 9급 1명), 노후 연안구조정을 대체하여 도입되는 신규 연안구조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경장 5명, 순경 5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필요한 인력 4명(경사 2명, 8급 2명) 중 2명(경사 2명)은 증원하고, 2명(8급 2명)은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받으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4.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 중 “수상레저”를 각각 “수상·수중레저”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민관”을 “수상·수중레저 안전 관련 민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5호 중 “수상레저”를 “수상·수중레저”로 한다.

별표 4 중 총 계 “518”을 “519”로, 일반직 계 “100”을 “101”로, 3급 또는 4급 이하 “99”를 “100”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 계 “12,698”을 “12,790”으로, 경찰공무원 계 “11,500”을 “11,568”로, 총경 이하 “11,491”을 “11,559”로, 일반직 계 “1,198”을 “1,222”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83”을 “1,207”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12,686”을 “12,776”으로, 경찰공무원 계 “11,488”을 “11,556”으로, 총경 이하 “11,479”를 “11,547”로, 일반직 계 “1,198”을 “1,22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1,183”을 “1,205”로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8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3]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2,788
경찰공무원 계	11,568
치안정감	1
치안감	3
경무관	5
총경 이하	11,559
일반직 계	1,220
3급 또는 4급 이하	1,205
전문경력관	1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구조안전국) ①·② (생략)	제12조(구조안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13. <u>수상·수중레저</u> ----- -----
14. 수상레저 안전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u>수상·수중레저</u> ----- -----
15.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5. <u>수상·수중레저</u> ----- -----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17.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및 안전관리의 감독·지도	17. <u>수상·수중레저</u> ----- -----
18. 수상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u>민관</u> 협업체계 구성	18. ----- --- <u>수상·수중레저 안전 관련 민관</u> -----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② (생략)	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수상레저</u> 안전관리	5. <u>수상·수중레저</u> ----- --

6. ~ 13. (생략)	6. ~ 13.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8</u>	<u>519</u>	+1
•	•	•	
•	•	•	
일반직 계	<u>100</u>	<u>101</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99</u>	<u>100</u>	+1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698</u>	<u>12,790</u>	+92
경찰공무원 계	<u>11,500</u>	<u>11,568</u>	+68
·	·	·	
·	·	·	
총경 이하	<u>11,491</u>	<u>11,559</u>	+68
일반직 계	<u>1,198</u>	<u>1,222</u>	+24
3급 또는 4급 이하	<u>1,183</u>	<u>1,207</u>	+24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의2]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3601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686</u>	<u>12,776</u>	+90
경찰공무원 계	<u>11,488</u>	<u>11,556</u>	+68
·	·	·	
·	·	·	
총경 이하	<u>11,479</u>	<u>11,547</u>	+68
일반직 계	<u>1,198</u>	<u>1,220</u>	+22
3급 또는 4급 이하	<u>1,183</u>	<u>1,205</u>	+22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93